

## 2. 地方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대통령령 제15,489호 1997. 10. 1

### 주 요 골 자

-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의 2 제1항).
-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미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제3항).
-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영 제50조 내지 제61조).
-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영 제84조의 4 제1항제1호).

-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영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영 제126조의 2 제7호).
-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로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영 제194조의 14 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 15 제2항제5호).
-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안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영 제194조의 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영 제230조).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법률 제540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 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 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4 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 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5 조(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 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①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27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앞의 “제9절 보칙”을 삭제하고, 제39조의 2 앞에 “제9절 서류의 송달 등”을 삽입한다.

제39조의 2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이 항”을 “이 조”로, “도세”를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는 시·군이 공동시설세를 징수 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및 제46조의 2 내지 제46조의 5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10절(제50조 내지 제53조) 및 제11절(제54조 내지 제61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0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50 조(세무사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법 제66조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 51 조(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 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털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52 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체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

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 53 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 제 11 절 이의신청 등

제 54 조(이의신청)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자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 ④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

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5 조(심사청구)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으로본다.

제 56 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7 조(결정 등) ① 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8 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 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시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제 59 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0 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 61 조(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중 “사용검사필증”을 각각 “사용승인서”로 하고, 동조제6항·제7항 본문 및 제9항 단서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제3항, 제75조 및 제77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1조제4항”을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한다.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각종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80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

다.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구매·판매사업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

(1)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5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32조제1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9호,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7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96조제2호 및 제3호, 제102조제6호 및 제7호, 제12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

(4)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 제3호·제9호 및 제16호, 동 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5)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8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9호에 규정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는 3년

사.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용 토지는 3년

제84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

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그 최저면적기준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직접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의4 제4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

중 “채석을”을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범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로 한다.

제84조의 5 제1항제1호중 “결혼을 하였거나 30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를 “결혼한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30세이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로 하고, 동항제7호중 “1500씨이하”를 “2,000씨이하”로 하며, 동항제8호가목 본문 중 “허가를 받은 자가”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호·제8호·제9호 및 제14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9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여,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매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자동차운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정보화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원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 · 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9.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제124조제2항제18호중 “형식검정”을 “형식검정 · 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으로 한다.  
제126조의 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면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 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나.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

업소에서 폐차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130조의 4 제1호중 “각종학교”를 “학  
교”로 한다.

제130조의 1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  
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이상의 합  
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  
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  
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  
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  
야 한다.

제146조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6 조의 7(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법 제196조의 8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  
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  
세대상기간의 일수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제148조제2항제7호중 “무우·생강무우”를  
“무·생강무”로 하고, 동항 제10호중  
“도마도”를 “토마토”로 한다.

194조의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  
함한다)

제194조의 14제3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조중 “도·소  
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  
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를 “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  
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또는 건설기계매매  
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  
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  
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  
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  
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  
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  
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  
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 15 제1항제2호마목중 “내무부  
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서”를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한 법인이”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를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로 한다. 제194조의 15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 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제194조의 15 제2항제5호에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제194조의 15 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의 2”를 “석유사업법 제17조”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임업협동조합 · 인삼협동조

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토지”를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유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이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94조의15제5항중 “제1항제2호라목 내지 바목”을 “제1항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제2항제5호 각목”을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 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으로,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를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1호중 “박물관”을 “박물관 · 과학관 · 미술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호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한의과대학 ·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 전단중 "15만제곱미터"를 "25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 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

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26조 후단중 "100분의 30(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을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100분의 35)"로 한다.

제227조제2호중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제229조제1항중 "해운법 제4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빙거나,"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으로 한다.

제2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0 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0 조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한다. 다만, 법 제2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장에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2 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무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 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종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종제27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한다.

#### 5. 전문건설업(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일반건설업

별표 제2종제22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2종제24호를 삭제하며, 제2종제80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종업원(5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별표 제3종제20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3종제23호의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하며, 제3종제62호중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을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등록”으로 하고, 제3종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4. 전자파적합등록

별표 제4종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제4조제24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며, 제4종24호의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한다.

#### 4. 무역대리업

별표 제5종제16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5종제18의 2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제2종”을 “제1종”으로 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 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 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 부터 적용한다.

**제 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던

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이의신청 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 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료 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주택회보